

2026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는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, 관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자·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6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」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
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

I 사업개요

- 사업목적
 -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
 -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IR 역량 강화
- 주최/주관 : 김해시, (재)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, (주)탭엔젤파트너스
- 지원대상 : 김해소재 스타트업 및 이전 예정중인 관외(예비)창업자
- 지원기간 : 2026년 6월 ~ 12월(6개월)
- 지원내용 : 전문가 멘토링,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, 데모데이 연계 등

멘토링	글로벌 연계	데모데이	투자
·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피드백 등 전문가 멘토링 제공	⊕ ·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 구성 등 기본 교육 · 글로벌 진출 기업별 해외 IR 컨설팅 등	⊕ · Pre IR, G-row UP! 연계 지원	⊕ · Pre IR, G-row UP! 연계 지원

- 선정규모 : 총 10개사 내외
 - 초기 기업 : 5개사 내외(창업 3년 미만 기업)
 - 도약 기업 : 5개사 내외(창업 3년 이상 10년 이내 기업)
- ※ 김해지역 외 기업의 경우, 사업기간 내에 관내로 본사 또는 연구소, 공장, 지사이전 하여함

II

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2026년 6월 ~ 12월(6개월)
- 지원내용 : 전문가 멘토링,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, 데모데이 연계 등

구분	세부내용
전문가 멘토링	· (멘토링)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1:1 멘토링 제공(5회)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 자문 등 · (IR) 기업진단을 통한 그룹 분류, 단계별 성장전략 및 투자로드맵 수립, IR 피칭 트레이닝 등
글로벌 연계 프로그램	·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진출 특화 교육 · 글로벌 진출 기업 대상 해외 IR 컨설팅 및 멘토
데모데이 연계	· Pre IR, G-row UP! 연계 지원
투자	· AC·VC 등 연계하여 네트워킹 기회 제공 · 우수기업 대상 직접 투자 검토 및 오픈이노베이션 연계

III

신청 및 접수기간

- 모집기간 : 2026. 6. 8.(월) ~ 6. 18.(목) 18:00까지 ※ 시간엄수
- 모집대상
 - 신청자격 : 김해소재 스타트업 및 이전 예정중인 관외(예비)창업자
 - 총 10개사 내외(초기 5개사, 도약 5개사)
-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최종선정	⑤ 오리엔테이션
·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	·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진행(1.5배수 내외 선정)	·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창업 아이템별 심층 평가	·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10개사 선정	· 선정기업 10개사 대상 사업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
~'26.6월	~'26.6월	~'26.6월	~'26.6월	'26.7월 중

※ 모집 결과에 따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

○ 문 의 처

-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창업인재양성팀 ☎ 055-310-9270
- (주)탭엔젤파트너스(운용사/접수처) ☎ 032-215-6858

○ 신청서류 및 제출처

- K-스타트업 홈페이지 (www.k-startup.go.kr)에서 서식 다운로드
구글폼(<https://forms.gle/Lag2UFSv7ZUKhaNX7>) 접수
-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
마감 1일 전에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

구분	작성내용	비고
1	참가신청서	【서식1】
2	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【서식2】
3	사업계획서*	【서식3】
4	사업자등록증	자유양식
5	법인등기부등본	최근일자 기준
6	매출증빙자료**	해당 시
7	본사 이전 또는 지사설립 계획서	【서식4】해당 시

* 반드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
** 매출증빙자료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로 제출(제출 불가 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)

IV

평가방법

- 요건검토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
- 서류검토 :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선정규모의 1.5~2배수
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및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< 서류평가 가점 항목 >

구분	세부내용	점수
김해시 5대 전략산업 및 미래기반산업	- 5대 전략산업 : 의생명·의료기기/ 디지털 물류/ 스마트센서/ 미래자동차/ 지능형 로봇 관련 업종 - 미래기반산업 : 액화수소/민군 MRO/ ICT 융합/ 메타버스&콘텐츠/ 식품	1
청년 창업자	- 김해시 청년 기본조례(제2139호)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 우대	1

*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

○ 발표평가 :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, 사업화 전략,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진행
- ※ 발표자는 기업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임·직원 대리 발표 가능 (위임장 제출)
- 평가시간은 15분 이내(발표 7분, 질의응답 8분)로 운영되며,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진행함
- 심사위원 구성 : 총 3인 이상 구성
- 심사산출 : 위원별 총점 합산 결과, 평균 값으로 순위 부여

○ 평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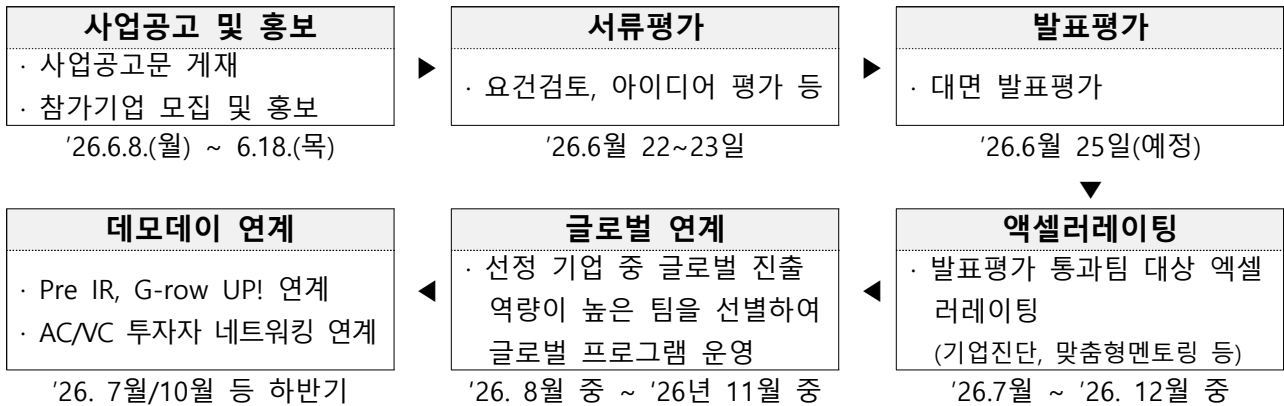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
1. 팀구성	CEO 및 핵심 인력 우수성	10
2. 시장성	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성	15
	경쟁 현황 및 차별화	15
3. 기술성	개발역량, 독창성, 차별성, 경쟁우위	15
	기술개발 난이도 및 진입장벽	15
4. 사업성	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	15
	사업화 역량	15
최 종 점 수		100

○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○ 심사결과

- 1차 서류평가 :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- 2차 발표평가 :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□ 사업 운영일정



* 상기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V

유의사항

-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(신청자)가 해야 되며,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‘신청제외 대상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의 신청, 심사에 있어서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·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

- 본 공고문은 ‘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’에 한하며,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 가능하며,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의 포기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

【붙임 1】

창업여부 기준표

산업기업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 사업 개시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동종창업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 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 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 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【붙임 2】

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